## 육아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만3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유용한 제도를 소개한다.

육아 지원 제도1. **만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유아·아동 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만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료 지원 내용**: 아이 연령에 따라 월24만 원부터 47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 **만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료** 지원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 **만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료**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22)

육아 지원 제도2.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6세 이하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0세에서 1세는 월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만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아이 연령과 농어촌 지역, 장애 유무에 따라 월10만원부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기간은 1년이내로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150만 원, 하한액 70 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3개월에 대해 각각 최대300만원(동상 임금100%) 지원한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조기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 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면 통 상임금의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받고, 1시간 초과하면 통상임 금의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원)에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 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시간 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3개월부터 만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요금은 아이만 돌봐주는 일반형은 시간당 1만550원, 아동 관련 가사까지 도와주는 종합형은 시간당 1만3720원이다.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550원이다. 정부 지원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맞벌이가정인 경우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150%기준(2022년3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22만3722원, 지역 가입자24만2987원, 혼합22만7649원)이하인 가정에 한한다. 이 외에도 보육 시설에서 아동 돌봄을 보조해주는 기관연계 서비스,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아동들에게 가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 민센터에서 신청한다. 부모가 모두 직장 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자가 부담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한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문의처**: 아이돌봄상담 대표전화(1577-2514)